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1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B

피고1. 대한민국

2. C

3. D

4. E

5. F

6. G

변론 종결2020. 4. 22.

판결 선고2020. 5. 13.

주 문

1.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는 원고에게 각 천안시 서북구 H 대 536m²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8.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H 대 536㎡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천안시 서북구 H 대 536㎡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8. 12. 25. 당시 수원 평택지구 L교회에서 근무 중이던 소외 J(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던 천안시 서북구 K 토지 중 1965. 8. 31. 분할된 토지로서 위 사정 당시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L교회 사제관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소외인이 1925. 1. 28. 사망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현재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에 소외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는 2018.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M'(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한자 성명만 등재되어 있으며 그 외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인지 여부를 일응 확인할 수 없는 한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등록된 사정명의인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 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6739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38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21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5 내지 갑 7의 각 기재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인과 이 사건 사정명의인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확신이 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더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8.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한대균